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21호 2019. 2. 2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15호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22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41호 인천광역시서구검단노인복지관 직인등록 공고
----- 3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2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방건설(주) (대표 구찬우)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2블록
 - 나. 대지면적 : 88,62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43,660.1824㎡ (지하3층, 지상20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21개동 1,417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616,258,815천원
4. 사업기간 : 2019. 05. 04. ~ 2022. 03. 03.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6-6호(2016.1.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2-101호선, 사업명: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및 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3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01호선)
- 명칭: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면적: $A=1,512\text{m}^2$
- 규모: $B=8.0\text{m}$, $L=192.9\text{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7. 3. 20. ~ 2018. 12. 31.
- 변경: 2017. 3. 20. ~ 2020.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변경없음	395-203	대	21	21	임홍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39번길 8-28(상동)	부천농업협동조합	신상동지점	근저당권	
2	기정	395-215	도	375	375	이근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8				
	변경	395-215	도	375	37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3	변경없음	395-214	대	15	15	고정중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300, 105동 301호(대림아파트)				
4	변경없음	395-216	대	8	8	강전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9 대명아파트 101-1105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주)신한은행	일산덕이지점	근저당권	
						김순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로 67	서인천농업협동조합	검암지점	근저당권	
						김창일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06번길38,101-401(검암동,천우하이빌)	농협은행주식회사 외 1	북인천지점	근저당권	
5	변경없음	395-151	도	7	7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주)신한은행	일산덕이지점	근저당권	
6	변경없음	395-213	대	41	41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주)신한은행	일산덕이지점	근저당권	
7	변경없음	395-212	대	23	23	류광순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8,101-611(문래두산위브)	검단농업협동조합	오왕지점	근저당권	
8	변경없음	395-205	답	65	65	김옥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0	서인천농업협동조합	건지지점	근저당권	
9	변경없음	395-202	답	581	581	국	기획재정부				
10	변경없음	395-208	대	8	8	김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9				
11	변경없음	395-206	대	1	1	김병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45(오류동)	(주)신한은행	검단산단금융센터	근저당권	
12	기정	395-207	도	75	75	이근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8				
	변경	395-207	도	75	7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3	변경없음	369-14	대	1	1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주)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14	변경없음	369-15	대	4	4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주)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15	변경없음	369-12	도	93	93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주)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16	변경없음	산213-2	도	114	114	국	국토교통부				
17	기정	산182-10	임	32	32	이종율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105				
	변경	산182-10	임	32	32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8	변경없음	369-16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19	변경없음	395-209	대	2	2	오정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3				
20	변경없음	395-204	대	15	15	이준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6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1	변경없음	395-211	중	4	4	금호중앙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89				
22	변경없음	395-210	전	5	5	이권형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35				
23	변경없음	395-217	임	6	6	이종혁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검단아이파크아파트 103-602				
24	변경없음	395-218	도	4	4	국	국토교통부				
계	변경없음			1,512							

■ 지 장 물 조 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기정	395-212	화장실	블록조샌드위치	5.10㎡	류광순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8, 101-611(문래두산위브)	
			간판	3.5×1.5	1개소			
	변경	395-212	화장실	블록 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5.1㎡	류광순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8, 101-611(문래두산위브)	
			간판	3.5×1.5, 철제기둥 2.5m	1식			
2	기정	395-211	담장	H=1.5m	9.0m	금호중앙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89	
	변경	395-211	웬스	H=1.5m	9m	금호중앙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89	
3	기정	295-202	창고	샌드위치 판넬 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35.30			
	변경	395-202	창고	샌드위치 판넬 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35.30㎡	최점홍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와북로 228-5	
4	기정	295-202	창고	블럭 조 합석 지붕	12.48	김문원	인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3(오류동)	
			수목	가문비나무 외	3주			
	변경	395-202	창고	블럭 조 합석 지붕	12.48㎡			
			수목	향나무(수령 30년)	4주			
5	기정	295-202	화장실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9.24	신의균	인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1(오류동)	
			수목		1주			
			담장	H=1.7m	L=8.5m			
			대문	3.2 X 2.0	1개소			
			기둥	0.4 X 0.5, H=2.8m	2개소			
			대문지붕	4.6 X 1.2, T=0.25m	1개소			
	변경	395-202	창고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9.24㎡	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수목	앵두, 수령 7년	1주			
			수목	사철, 수령 7년	1주			
			수목	장미, 수령 7년	1주			
			수목	관상수, 수령 7년	1주			
			담장	세멘블럭, H=1.7m	8.5m			
			대문	적벽돌문주, 3.2 X 2.0, 슬래브지붕	1식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6	기정	295-208	수목	가문비나무 외	7주	김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08	
	변경	395-208	수목	꽃나무, 수령 7년, H:2m	1식	김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3(오류동)	
			수목	향나무, 수령 30년, H:5m	1식			
			수목	무궁화나무, 수령 30년, H:3m	1식			
			수목	단풍나무, 수령 5년, H:3m	1식			
			수목	감나무, 수령 30년, H:8m	1식			
			수목	단풍나무, 수령 30년, H:8m	1식			
			수목	밥알꽃나무, 수령 7년, H:2m	1식			
			수목	라일락, 수령 30년, H:3m	1식			
			수목	사철나무, 수령 30년, H:3m	1식			
화단	조경석	20㎡						
7	기정	295-206	수목	소나무 외	5주	김병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07	
	변경	395-207	수목	소나무	3주	김병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54(오류동)	
			수목	가시오가피	4주			
			수목	사철	1주			
			수목	무궁화나무	3주			
			수목	장미	1주			
			화단	조경석	10㎡			
			웬스	철계기둥, H:1.5m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8㎡						
8	기정	395-214	-	-	-			
	변경	395-214	수목	메타세콰이어(수고 15m)	1식	고경중	인천 연수구 원인제로 300, 105동 301호(대림아파트)	
9	변경없음	395-213	한전주	8327E 622 안동지 78	1	한국전력		
10	변경없음	395-215	한전주	확인불가	1	한국전력		
11	변경없음	395-202	한전주	8327E 732 안동지 77	1	한국전력		
12	변경없음	395-202	한전주	8327E 733 안동지 77-B1	1	한국전력		
13	변경없음	395-207	한전주	8327E 741 안동지 77	1	한국전력		
14	변경없음	395-217	한전주	8327E 841 안동지 76	1	한국전력		
15	변경없음	산182-10	한전주	8327E 843 안동지 76-L1	1	한국전력		
16	변경없음	395-214	채신주	KT-입상1호	1	KT		
17	변경없음	395-213	채신주	확인불가	1	KT		
18	변경없음	395-202	채신주	확인불가	1	KT		
19	변경없음	395-207	채신주	확인불가	1	KT		
20	변경없음	395-217	채신주	오류20 1-2	1	KT		
21	변경없음	산182-10	채신주	오류20 L1	1	KT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3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화로 77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2.2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2-2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1-1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77 (오류동)	20090922	봉화촌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을 지나는 도로이므로 자연마을의 이름을 따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9-2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80 (경서동)	20090922	도로진행방향에 호두산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산로라 명명함	
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7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100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24-8	인천광역시 서구 꽃뫼길 121-1 (시천동)	20090922	꽃뫼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6-3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7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315호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 지원금액 : 세대당 금600,000원 범위 내(연간 1회)
3. 지원대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세대(주민등록 기준)
 - * 지정당시 거주자 사망한 경우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동일 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동일 세대에 포함.
 - 2017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금4,527,622원) 이하인 세대
4.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내용

- 2018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단, 법정 세부 보조항목별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조사 → 결정 및 개별 통보(30일 이내)

7.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5.(월) ~ 3. 25.(월)
- 접수 및 문의 : 서구청 도시개발과(G.B관리팀, ☎ 032-560-4683)
- 신청시 제출서류(우리 구 도시개발과에 서류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3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9.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의 기능 및 권한 강화
- 주민총회 및 자치(마을)계획 운영
-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자격 확대
-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 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
- 분과위원회 구성
- 행·재정적 지원 확대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2019. 3.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2,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 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1.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의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 :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 보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는 당해 동 소재 각 급 학교·기관·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

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방법은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민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자치계획의 효력)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임기 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시범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3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8.12.7.)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적을 변경(안 제1조)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내용을 변경(안 제2조)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내용을 변경(안 제3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내용을 변경(안 제5조)
-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를 추가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경제에너지과, 전화 032-560-4432, Fax 032-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1.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 대하여도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해야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

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 ⑤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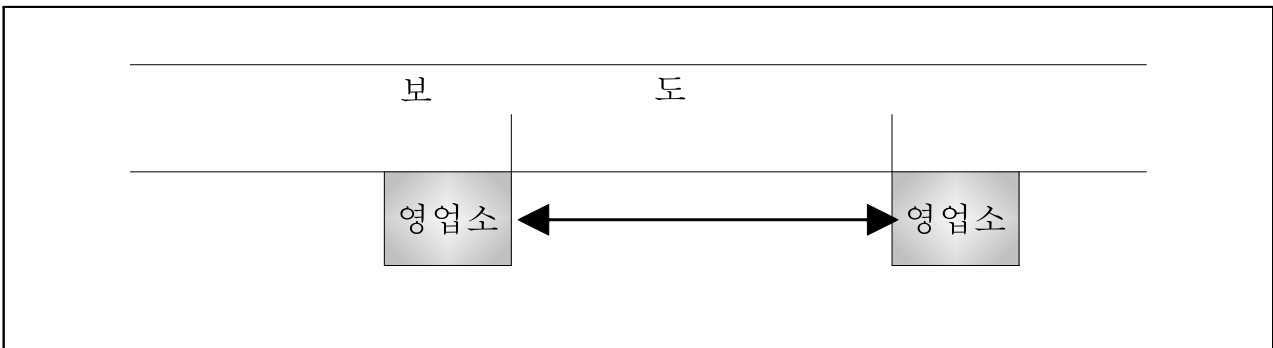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제5조 관련)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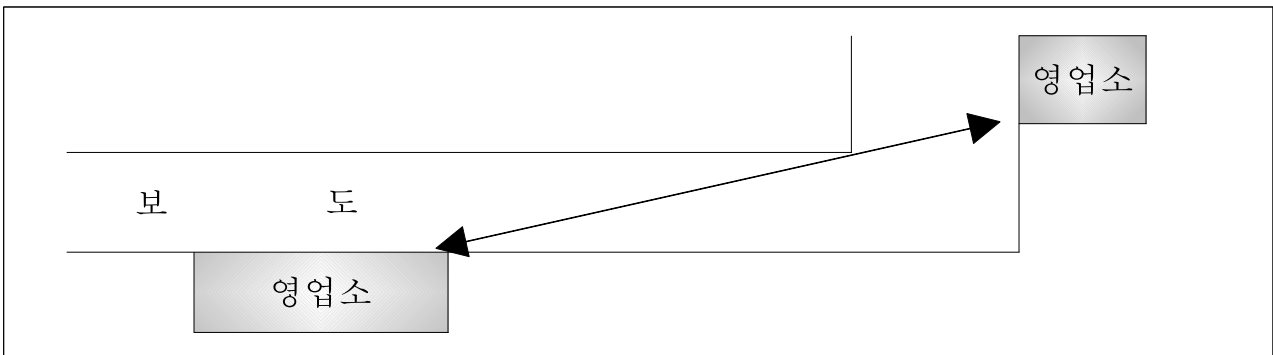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물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1층 출입구(영업소와 최단거리)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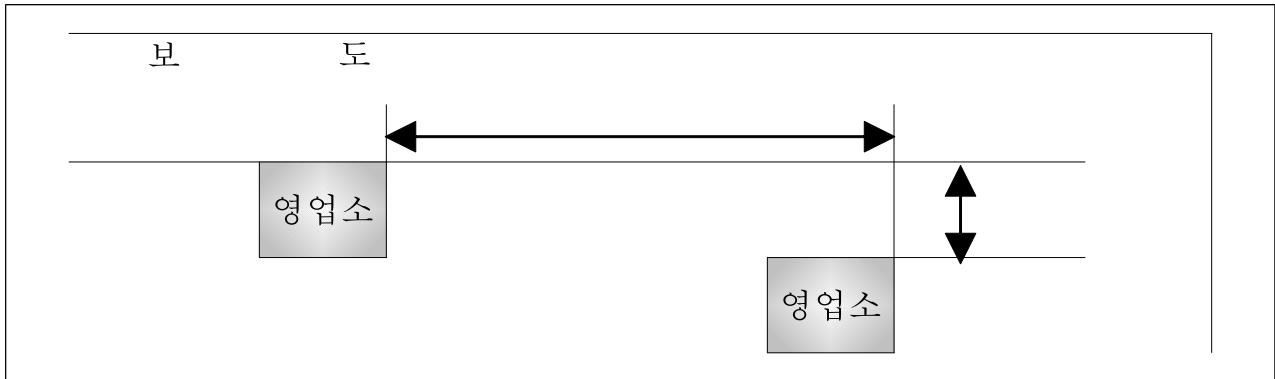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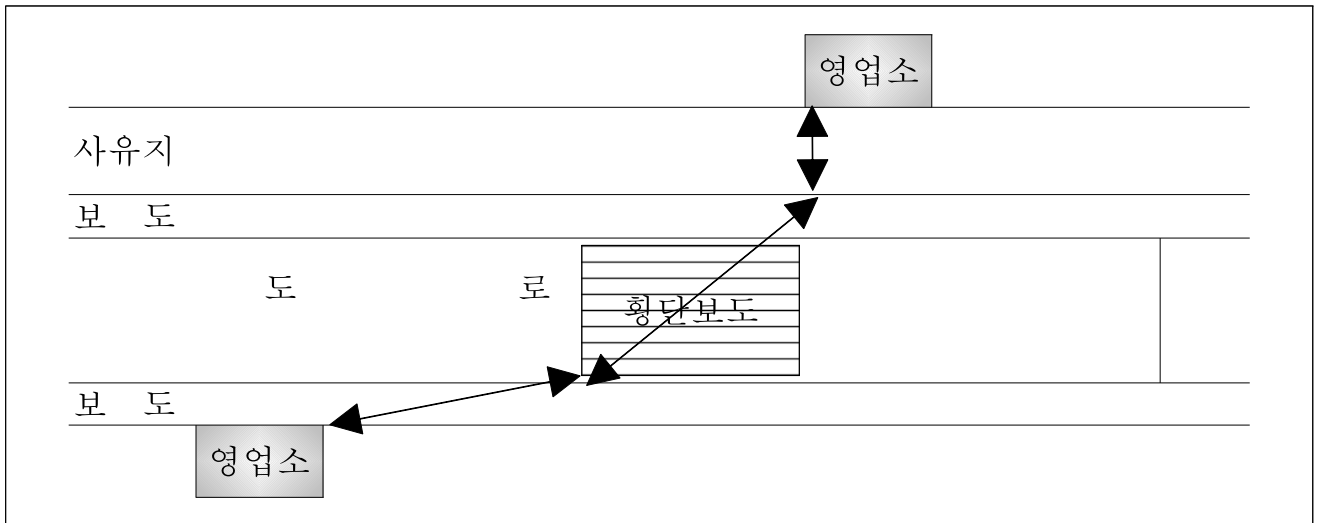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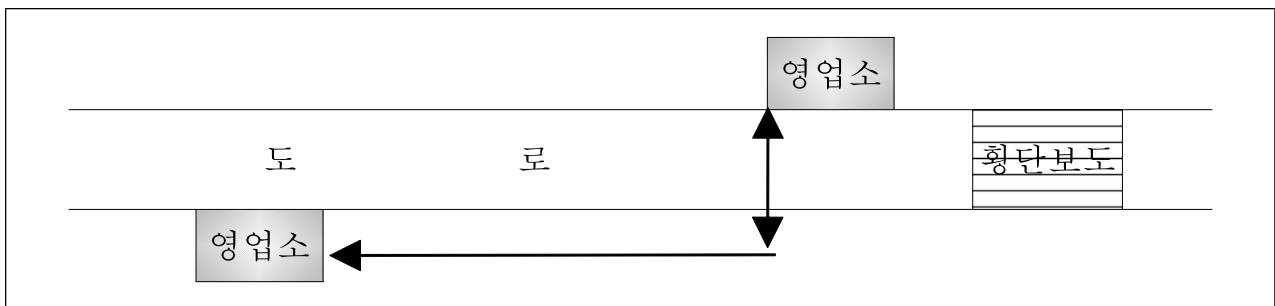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4)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41호

인천광역시서구검단노인복지관 직인등록 공고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검단노인복지관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제9호(공고)에 의거하여 신조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다 음

1. 등록직인 사용개시일: 2019년 2월 25일
2. 직인등록사유: 개관에 따른 직인등록
3. 직인인영
 - 가. 등록직인: 인천광역시서구검단노인복지관장인
 - 나. 수 량: 1종 (신조1)
 - 다. 공 고 처: 인천광역시서구청 공보

직 인 명	인천광역시서구검단노인복지관장인			
종 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 인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인	관리부서	검단노인복지관
신 조 직 인		등 록 일	2019년 2월 25일	
		최초사용일	2019년 2월 25일	
		재 료	흑인조	
		교부사유	개관에 따른 신조	
비 고				